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나206730 판결 [건물명도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나20673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2. 13 선고 2022가단907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4. 7. 11.

판결 선고 2024. 10. 10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. 2. 13. 선고 2022가단9071 판결

주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-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

가.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4.6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2. 12. 8.부터 가.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 "나. 손해배상청구"를 "나. 부당이득반환청구"로, 같은 쪽 제16행 중 "사건 점포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"를 "사건 점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"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우석

판사박재형

판사정육도

별지